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5일 12시 56분



목차

목차	2
등록현황	3
어항시설의 손괴 등 신고	3

어항시설의 손괴 등 신고

2014.04.17 조회수 601 등록자 박종열

관리번호	전라남도 여수시-2013-0140
담당부서	해양항만레저과
상위법령	어촌·어항법 제9조
조례	여수시 어항관리 조례 제9조
유형	3호 - 신고의무
법령공표일	누락규제
존속기한	2006-10-20
규제시행/폐지일	2006-10-20
규제내용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목록

이전글

전라남도 여수시-2013-0133

다음글

전라남도 여수시-2013-0142

Yeosu Web Contents

